

# 예 산 총 칙

2009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0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421,147,022	12,634,411
일반회계	417,514,711	12,525,441
특별회계	3,632,311	108,969
기타특별회계	3,632,311	108,969
상·하수도사업특별회계	1,907,923	57,238
주택사업특별회계	40,923	1,228
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	856,707	25,701
사회진흥소득사업특별회계	280,000	8,400
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	546,758	16,403

제 2 조 2009년도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

제 3 조 사고이월 사업은 별첨 "사고이월사업조서"와 같다

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

제 5 조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"채무부담행위조서"와 같다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,746,635천원으로 한다

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는 상호간에 이용할 수 있다

제 8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로 간주처리 한다